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소화약제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포소화약제 기준 강화 (제4조제6호 및 제9호)
- 나. 강화액 소화약제 기준 강화 (제6조제5항 및 제10항)
- 다. 분말소화약제 기준 강화 (제7조제4호, 제9호 및 제10호)
- 라. 침윤소화약제 기준 강화 (제10조제1항제8호)
- 마. 표시 명판시험 신설 (제13조제2항)